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251
----------	-----

2023. 9. 11.  
자치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8. 30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. 8. 30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9. 11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,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「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9조 개정)
  - 존속기한: 2028년 12월 31일까지 (5년)
- 용어 및 문구 정비(안 제3조제1호 및 제1조 개정)
  - 잡종재산 → 일반재산
  - “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→ “제9조제2항에 따라”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안건은 남양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설치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안건으로,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법 제9조제4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음.
- 본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「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된 사항이며,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음.

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### 5. 토론요지

- 없 음

### 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